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1.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거 법 조 항	③ 대 상 세 액	④ 세 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 구 분	⑥ 근거 법 조 항	⑦ 이 월 과 세 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근거법 조항	⑩대 상 금 액	⑪세 액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03조의51 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 103조의63 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 103조의63 2항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	「지방세법」 103조의63 3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32조		
합	계		

작성 방법

1. 공제(감면)세액란

- ①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 ⑤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 ⑧구분: 「지방세법」 상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 「지방세법」 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및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⑬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